

## 건물임대차계약서

임대인〇〇〇(이하"갑"이라 한다)과 임차인〇〇〇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아래표 시의 부동산(이하 "표시부동산"이라 한다.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 을 체결한다.

## <부동산의 표시>

소 재 지	구 조	면 적	
	용도		

제1조(목적) 갑은 표시부동산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상품홍보용 공간으로 사용한다.

**제2조(기간)** 임대차 기간은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20〇〇년 〇월 〇일로 함 **제3조(임차료)** 임차료는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

계 약 금	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		
잔 금	금	원은 20○○년 ○월 ○일에 지급하기로 함	

제4조(부동산 명도 등) ①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〇〇년 〇월 〇일로 함.

- ② 갑이 제1항의 인도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\_\_\_\_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5조(중축 및 전대 등 제한) 표시 부동산의 구조변경 또는 중·개축시, 표시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용도 변경시, 표시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, 임차권의 양도하려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6조(제세공과금) 제세공과금 등은 임차기간 동안 갑이 일체 부담하기로 한다.

- 제7조(계약의 해제 및 해지) ① 을의 잔금 지급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②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 - 1. 을이 제5조에 위반한 경우

- 2. 표시부동산을 심하게 파손하고 갑의 요구에도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
- 3.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
- 제8조(원상회복) ① 을은 임대기간 중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표시부동산의 파손·오손 또는 무단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후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.
  - ② 표시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 되었을 때에는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・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## 2000년 0월 0일

임대인	주 소		
	성 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mark>	
임 차 인	주 소		
	성 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mark>	
입 회 인	주 소		
	성 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mark>	